

### §977. 보건 안전 관련 용어.

다음의 용어들은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가압스팀멸균기** — 고압력 포화증기를 이용해서 도구, 장비 및 그 외 물품을 소독하는 기구.

**일반의약품** —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 대중이 구입할 수 있는 미용, 이발, 전기분해 요법 제품.

**화장품** — 사람들의 외모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

**오염된** — 혈액이나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감염원이 물품의 표면에 묻어있거나 눈에 보이는 먼지, 모발, 피부 조각이 존재하는 상태.

**진피** — 표피 바로 아래 세포층; 살아있는 피부세포층.

**살균하다 또는 살균** — 기구나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해로운 박테리아, 바이러스 병원균을 제거하는 행위.

**소독제** — 미국 환경보호국 (EPA) 등록 제품으로, 미국환경보호국에서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인증한 제품. 그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EPA 등록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도구를 살균할 수 있도록 액체로 되어있거나 전기 기구나 가위를 살균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나 와이프 형태여야 한다..

**건식 열소독기구** — 거의 또는 전혀 수증기가 없는고온 에어를 사용해서 설비와 물품을 소독하는 기기.

**표피** — 피부의 가장 바깥쪽 세포층; 죽은 세포층.

**전동 기구** — 이발, 미용, 전기분해 요법을 위해 작동시키려면 전기가 필요한 기구로서, 전기 코드, 무선 충전기, 건전지를 사용하는 모든 기구. 클리퍼, 드라이어, 컬링 아이언, 스트레이트너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외에 다른 기구들도 있다.

**발 세면기** — 풋스파 의자에 앉아서 페디큐어하는 동안 고객이 발을 담구는 물 담은 용기.

**고온스타일링 기구** — 헤어 스타일링을 할때 열을 이용하는 기구.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 — 이발, 미용, 전기분해 요법을 위해 사용하는 기구로서 어떤 형태의 전기도 사용하지 않는기구. 가위, 면도칼, 큐티클니퍼, 큐티클 푸셔, 네일 클리퍼, 메탈파일, 메탈스무더, 빗, 헤어클립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 외에 다른 기구들도 있다.

**유독성이 있는** — 인체에 들어오거나 접촉하면 병을 일으키거나 사망의 원인 될 수도 있는 물질

**위생적인** —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

**때묻은** — 더러운; 깨끗하지 않은.

**소독하다 또는 소독** — 가압스팀멸균처리기 또는 건식 열소독기구를 사용해서 전파나 전염이 가능한 인자(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포자)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죽이는 과정.

**속조** — 물을 채워서, 페디큐어하는 동안, 고객이 발을 담글 수 있는 독립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오픈형 그릇.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 978. 최소 장비 및 용품.

(a) 시설 및 학교는 다음의 최소 장비와 용품을 보유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1) 헤어 서비스를 실습하는 장소라면 한 개 이상 뚜껑이 달린 머리카락 처리용 쓰레기통 배치. 머리카락은 반드시 뚜껑이 달린 용기에 처리해야 한다.
- (2) 밀폐된 공중 구역에 더러워진 타월과 가운, 시트를보관하는 밀폐형 용기.
- (3) 깨끗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 수건, 가운, 작업복, 린넨, 및 시트를 보관하는 밀폐형 캐비닛, 서랍, 또는 용기.

- (4) 기구와 장비를 소독하는데 사용하는 소독제 용기. 반드시 “소독제”라고 표시된 라벨을 붙여야 한다.
  - (5) (4)번 항목에서 명시된 용기에는 기구를 완전히 담글 수 있는 충분한 소독제가 들어 있어야 한다.
  - (6) 전기분해 요법이 시술될 경우, 982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압스팀멸균기 또는 건식 열소독기구.
  - (b) 시설과 학교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소독제를 혼합하여야 하고 항상 사용 할 수 있도록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 (c) 제조업체 라벨이 부착된 소독제 용기가 항상 시설 또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남은 소독제를 다 사용했다면, 제조업체 라벨이 부착된 빈 소독제 용기를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7312(e) 항.

**§ 979.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의 소독.**

(a) 가위를 제외하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소독가능한, 모든 기구는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독해야 한다:

- (1) 눈에 보이는 찌꺼기를 제거한다.
- (2) 비누 또는 세제와 물로 세척한다.
- (3)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종이 타월로 완전히 기구의 물기를 제거한다.
- (4) 그런 다음,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 효과가 입증된 EPA 등록 소독제에 완전히 담근다.
- (5) 면허 소지자 또는 학생은 기구를 소독제에서 꺼낼 때 보호장갑을 착용하거나, 집계를 사용해야 한다.

(b) (a) 항목에서 명시된 소독제는 다음과 같이 다루어야 한다:

- (1) 항상 뚜껑을 닫아 두어야 한다.
  - (2) 탁해보이거나 찌꺼기가 떠다니면,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 (c) 고객에게 사용했거나 더러워진 기구는 “더러운”, “때묻은”, 또는 “오염된”이라고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 (d) 소독된 모든 기구는 “깨끗한” 또는 “소독한”이라고 라벨을 부착한,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 (e) 소독한 기구는 소독할 수 없는 용기, 파우치, 또는 홀더에 두지 말아야 한다.
  - (f) 가위는 다음 절차에 따라 소독해야 한다:
    - (1) 보이는 찌꺼기를 제거한다.
    - (2) 비누 또는 세제와 물로 세척한다.
    - (3)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 효과가 입증된 EPA 등록 소독제를 뿌리거나 와이프 형태의 소독제로 닦는다.
  - (g) 소독한 가위는 소독할 수 없는 용기, 파우치, 또는 홀더에 두지 말아야 한다.
  - (h) 이 항에 명시된 기구를 982 항의 요건에 따라 살균한 경우, 이 항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7312(e) 항.

**§ 980. 전기 기구의 소독.**

(a) 클리퍼와 다른 전기 기구들은 다음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전에 소독해야 한다:

- (1) 우선, 보이는 찌꺼기를 제거한다; 그리고
- (2)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 효과가 입증된 EPA 등록 소독제를 뿌리거나 와이프 형태의 소독제로 닦는다.
- (b) 모든 소독한 전기 기구는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c) 고객에게 사용했거나 더러워진 전기 기구는 “더러운”, “때묻은”, 또는 “오염된”이라고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가열식 스타일링 기구는 제외).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 980.1. 월플 풋스파와 에어제트 세면기.

(a) 이 항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월플 풋스파” 또는 “스파”는 순환하는 물을 사용하는 모든 세면기로 정의된다.

(b) 에어제트 세면기는 에어제트 스트림 시스템을 사용하여 물을 순환시키는 세면기로 정의된다.

(c) 각 월플 풋스파 또는 에어제트 세면기는 고객에게 사용 후 다음 순서의 절차에 따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1) 세면기에서 물을 완전히 빼낸다.

(2) 세면기의 안쪽 벽을 문질러 닦고 깨끗한 솔과 액체 비누, 물로 눈에 보이는 찌꺼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3) 물로 스파 세면기를 헹군다.

(4) 스파 세면기를 깨끗한 물로 다시 채운다.

(5) 세면기의 물은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제 라벨이 부착된, 정확한 양(혼합 지침을 확인하려면 제조업체의 라벨 확인)의 EPA 등록 소독제를 넣어서 최소 10분 동안 순환시켜야 한다.

(6) 스파 세면기의 물을 빼고 헹군 다음 깨끗한 종이 타월로 닦아 물기를 제거한다.

(7)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고객에게 사용 후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d) 매일 일과 종료시, 마지막 고객 이용 후 월플 풋스파 또는 에어제트 세면기는 다음의 순서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1) 스크린과 기타 모든 분리 가능한 부품을 분리한다.

(2) 스크린과 세면기의 안쪽, 기타 분리 가능한 부품, 그 부품의 후면에서 눈에 보이는 찌꺼기를 깨끗한 솔과 액체 비누(그러한 라벨이 붙어있는 비누 제품), 물을 사용해서 문질러 닦아낸다.

(3) 깨끗한 스크린과 기타 모든 분리 가능한 부품을 다시 삽입한다.

(4) 따뜻한 물과 세제(그러한 라벨이 붙어있는 세제 제품)를, 세면기에 채우고 스파 시스템을 통하여 최소 10분 동안(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세제를 순환시킨다.

(5) 세제 용액을 배출하고 세면기를 헹군다.

(6) 세면기에 깨끗한 물을 다시 채우고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제 라벨이 부착된, 정확한 양(혼합 지침을 확인하려면 제조업체의 라벨 확인)의 EPA 등록 병원용 액체 소독제를 넣어서 최소 10분 동안 순환시켜야 한다.

(7) 물을 배출시키고 헹군 다음 쓰지 않은 깨끗한 종이 타월로 닦아 세면기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8)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하루 일과 종료시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e) 최소 일주일에 한 번, (d) (1 ~ 6) 항목에 규정된 절차를 시행 한 후 각 월플 풋스파와 에어제트 세면기의 물을 배출하지 않고 다음의 절차를 순서대로 시행해야 한다:

(1) 소독제를 배출하지 않는다. 이 기구의 전원을 끄고 소독제를 최소 6시간 동안 그냥 둔다.

(2) 최소 6시간 동안 소독제를 그대로 둔 다음 소독제를 배출하고 깨끗한 물로 헹군다.

(3) 깨끗한 물로 세면기를 다시 채우고 시스템에서 물을 배출시킨다.

(4)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매주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f) 고객이나 위원회 담당자가 요청시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를 제공해야 한다.

(g) “서비스 정지” 월플 스파는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반드시 그 풋스파가 서비스 정지 중임을 표기해야 한다. 그 풋스파에는 “서비스 정지” 표지판을 의자에 올려 전시해야 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h) 이 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 벌금 및/또는 징계 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항을 준수하지 않은 각각의 월플 풋스파 또는 에어제트 세면기에 대해 별도로 위반 처리가 될 수 있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 980.2. 파이프 없는 풋스파의 청소 및 소독 절차.

(a) 이 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파이프 없는” 풋스파는 발판, 임펠러, 임펠러 장치와 프로펠러가 장착된 기구로 정의 된다.

(b) 각각의 파이프 없는 풋스파는 고객에게 사용 후 다음 순서의 절차에 따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1) 스파 세면기에서 물을 완전히 빼낸다.

(2)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발판과 모든 분리 가능한 부품을 분리한다.

(3) 임펠러, 발판, 세면기 안쪽 및/또는 기타 부품. 부품 뒤 또는 아래를 깨끗한 솔과 액체 비누 (그러한 라벨이 붙어있는 비누 제품), 물을 사용해서 보이는 모든 찌꺼기를 문질러 닦아낸다. 그런 다음 깨끗한 물로 헹군다.

(4) 깨끗이 청소된 발판 또는 기타 부품을 다시 조립한다.

(5) 세면기에 깨끗한 물을 다시 채우고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제 라벨이 부착된, 정확한 양(혼합 지침을 확인하려면 제조업체의 라벨 확인)의 EPA 등록 병원용 액체 소독제를 넣어서 최소 10분 동안 순환시켜야 한다.

(6) 물을 배출시키고 행군 다음 쓰지 않은 깨끗한 종이 타월로 닦아 세면기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7)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고객에게 사용 후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c) 매일 일과 종료시, 마지막 고객 이용 후 파이프 없는 풋스파는(b) (1 ~ 7) 항에서 설명한 순서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1) 따뜻한 물과 세제 (그러한 라벨이 붙어있는 세제 제품)를, 세면기에 채우고 스파 시스템을 통하여 최소 10분 동안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세제를 순환시킨다

(2) 세제 용액을 배출하고 세면기를 행군다.

(3) 세면기에 깨끗한 물을 다시 채우고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제 라벨이 부착된, 정확한 양(혼합 지침을 확인하려면 제조업체의 라벨 확인)의 EPA 등록 병원용 액체 소독제를 넣어서 최소 10분 동안 순환시켜야 한다.

(4) 물을 배출시키고 행군 다음 쓰지 않은 깨끗한 종이 타월로 닦아 세면기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5) 세면기가 완전히 마를때까지 둔다.

(6)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하루 일과 종료시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d) 최소 일주일에 한 번, (c) (1 ~ 3) 항목에 규정된 절차를 시행 한 후 각각의 파이프 없는 풋스파의 물을 배출하지 않고 다음의 절차를 순서대로 시행해야 한다:

(1) 소독제를 배출하지 않는다. 이 기구의 전원을 끄고 소독제를 최소 6 시간 동안 그냥 둔다.

(2) 최소 6 시간 동안 소독제를 그대로 둔 다음, 행군 다음 쓰지 않은 깨끗한 종이 타월로 닦아 세면기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3)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매주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 (e) 고객이나 위원회 담당자가 요청시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를 제공해야 한다.
- (f) “서비스 정지” 월풀 스파는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반드시 그 풋스파가 서비스 정지 중임을 표기해야 한다. 그 풋스파에는 “서비스 정지” 표지판을 의자에 올려 전시해야 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g) 이 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 벌금 및/또는 징계 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항을 준수하지 않은 각각의 파이프 없는 풋스파에 대해 별도로 위반 처리가 될 수 있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과 7406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 980.3. 월풀이 아닌 발 욕조 또는 욕조의 청소 및 소독.

- (a) 이 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월풀이 아닌 발 욕조” 또는 “욕조” 는 모든 대야, 욕조, 족욕기, 싱크 등 페디큐어 서비스 시 고객의 발을 씻기 위해 물을 담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장비를 의미한다.
- (b) 각각의 월풀이 아닌 대야 또는 발 욕조는 고객에게 사용 후 다음 순서의 절차에 따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 (1) 발 대야 또는 발 욕조에서 물을 완전히 빼낸다.
  - (2) 발 대야 또는 발 욕조 안쪽 면을 깨끗한 솔과 액체 비누 (그러한 라벨이 붙어있는 비누 제품), 물을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찌꺼기를 문질러 닦아낸다.
  - (3) 발 대야 또는 발 욕조를 깨끗한 물로 헹군다.
  - (4) 발 대야 또는 발 욕조에 깨끗한 물을 다시 채우고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제 라벨이 부착된, 정확한 양(혼합 지침을 확인하려면 제조업체의 라벨 확인)의 EPA 등록 병원용 액체 소독제를 넣어서 최소 10분 동안 순환시켜야 한다.
  - (5) 물을 배출시키고 헹군 다음 쓰지 않은 깨끗한 종이 타월로 닦아 세면기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 (6)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고객에게 사용 후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 (c) 고객이나 위원회 담당자가 요청시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를 제공해야 한다.
- (d) 이 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 벌금 및/또는 징계 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항을 준수하지 않은 각각의 월풀이 아닌 발 대야 또는 욕조에 대해 별도로 위반 처리가 될 수 있다.
- (e) 모든 소독한 대야나 욕조는 깨끗하고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청결” 또는 “소독 완료” 라벨을 달아서 보관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과 7406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 980.4 일회용 발 대야 또는 욕조용 라이너.

- (a) 발 대야 또는 욕조 전용으로 깔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회용, 사용 후 버릴 수 있는, 재활용 가능한 라이너는 사용 즉시 만약의 감염이나 재사용을 막기 위해 버려야 한다.
  - (1) 페디큐어 대야 라이너를 버리고나면 발 대야 또는 발 욕조를 깨끗한 솔과 액체 비누 (그러한 라벨이 붙어있는 비누 제품), 물을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찌꺼기를 문질러 닦아야 한다. 발 대야 또는 발 욕조를 깨끗한 물로 헹군 다음 쓰지 않은 깨끗한 종이 타월로 닦아 세면기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2)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고객에게 사용 후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 (3) 고객이나 위원회 담당자가 요청시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를 제공해야 한다.

(4) 라이너를 사용하는 시설이나 학교는 반드시 발 대야 욕조당 다섯(5) 개의 라이너를 준비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과 7406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 981. 기구 및 용품.

(a) 고객의 신체와 직접 닿고 소독할 수 없는 모든 기구와 용품(버퍼, 푸미스 스톤, 왁스 스틱, 발가락 분리대, 장갑, 면패드, 스폰지, 에머리보드, 닉스트립을 포함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은 한 사람의 고객에게 사용 후 즉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b) 새 제품과 일회 사용 후 폐기할 수 있는 기구들은 깨끗하고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새 제품”이라는 라벨을 붙여서 보관해야 한다.

(c) 시설 또는 학교에서 근무 또는 교육 중인 사람은 사업 및 전문업법 7316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행위를 하는 동안 의류 또는 유니폼에 어떠한 기구 또는 용품도 넣거나 달고 다니지 않아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9(e) 항.

### § 982. 전기분해 요법 기구의 살균.

(a) 학교와 시설에서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에 소독할 수 있는 모든 전기분해 요법 기구는, 일회용, 사전 소독, 사용 후 폐기 제품인 바늘/와이어 필라멘트를 제외하고, 다음에 나오는 방법 중 한 방법으로 살균해야 한다:

(1) 비누나 세제를 사용해서 물로 세척하고 (초음파 장비도 사용 가능), 다음 한 방법으로 소독한다:

(A)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 (FDA) 등록 가압스팀멸균기 사용.

(B)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 (FDA) 등록 건식 열소독기구 사용.

(C) 반드시 각각의 소독된 패키지에서 소독 과정이 완료되었는지 표시해 주는 화학적 (색변화)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2) 모든 소독된 기구는 사용 할 때까지 소독된 패키지 안에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이 패키지는 손상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소독 완료” 또는 “살균”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3) 고객에게 사용했거나 더러워진 기구는 “더러운”, “때묻은”, 또는 “오염된”이라고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4) 멸균장비는 매주 점검을 통하여 제조업체 지침에서 요구하는 온도에 도달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b) 일회용, 사전 소독, 사용 후 폐기 전기분해 요법 바늘/와이어 필라멘트는, 사용 즉시, 사용 전이라도 오염이 되었거나, 열어 보았을 때 손상되었을 경우, 반드시 구멍 방지 바늘 처분 용기에 넣어야 한다. 사분의 삼 이상 바늘 처분 용기가 차면 유해 폐기물로 처리해서 버리고 새 것으로 교환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 983. 개인 청결.

(a) 고객을 대하는 면허 소지자와 학생은 항상 의복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b)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면허 소지자와 학생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수행하기 바로 전에 비누와 물 또는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알콜 베이스의 손세정제를 사용해서 손을 철저히 씻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 984. 질병 및 감염.

(a) 시설 또는 학교는 알면서도 고객에게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이나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이, 시설이나 학교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담당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b) 시설 또는 학교는 알면서도 면허 소지자와 학생에게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이나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을 대상으로 면허 소지자와 학생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c) 면허 소지자 또는 학생과 고객 간에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 또는 기생충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감기 또는 인플루엔자, 열을 동반하는 기타 호흡기 질환, 해열 후 24 시간까지.
- 연쇄상구균 인두염 (“패혈성 인두염”), 치료 시작 후 24 시간 또한 해열 후 24 시간까지.
- 화농성 결막염 (“핑크 아이”), 의사나 다른 자격증있는 임상외과가 업무 복귀를 승인할 때 까지.
- 백일해 (“우핑코프”), 5일 간의 항생제 치료가 끝날 때까지
- 수두 (“치킨팍스”), 발진이 생긴 후 6일까지 또는 병소가 마르고 딱지가 생긴 경우 이 보다 일찍.
- 유행성이하선염, 이하선이 붓기 시작한 후 9일까지.
- 폐결핵, 지역 보건당국이 전염성이 없다고 확신할 때까지.
- 농가진 (박테리아 피부 감염), 치료 시작 후 24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 이기생충 (머릿니), 첫번째 치료 후 다음 날 아침까지.
- 옴 (“옴벌레”),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d) HIV/AIDS 와 B 형 간염 (HBV) 등 혈액 매개 질환은 이 장의 목적상 전염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 시설 또는 학교에서 근무 또는 교육하는 사람은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찰과상이나 베인 상처 등), 피부 감염이나 발진이 있는 사람의 피부나 두피에 서비스하지 아니한다. 또한 시설 또는 학교에서 근무 또는 교육하는 사람의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피부 감염이나 발진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장갑을 착용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시행할 수 없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보건안전법 121365 항.

### § 985. 넥스트립.

위생적인 넥스트립 또는 수건은 고객의 케이프 같은 보호용 덮개가 고객의 목에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 986. 목털이개 및 브러시.

(a) 시설이나 학교에서 고객에게 사용하는 목 또는 손톱 털이개와 다른 모든 메니큐어 브러시는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척해야 한다:

- (1) 눈에 보이는 모든 찌꺼기를 제거한다.
- (2) 비누 또는 세제로 물로 깨끗이 세척한다.

(3) 먼지털이개와 브러시를 말린다.

(4) 깨끗한 먼지털이개와 브러시를 “청결”이라고 라벨을 붙여서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다.

(5) 고객에게 사용되었거나 오염된 모든 털이개와 브러시는 “더러운”, “때묻은”, 또는 “오염된”이라고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b) 시설이나 학교에서 고객에게 사용하는 천연 섬유, 페이셜, 아크릴, 젤, 네일아트, 화장용 브러시는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척해야 한다:

- (1) 눈에 보이는 모든 찌꺼기를 제거한다.

- (2) 모너머, 메이크업 브러시 액체/스프레이 클리너, 알콜 등의 세정제를 사용해서 세척한다.
- (3) 브러시를 말린다.
- (4) 깨끗한 브러시를 “청결”이라고 라벨을 붙여서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다.
- (5) 고객에게 사용되었거나 오염된 브러시는 “더러운”, “때묻은”, 또는 “오염된”이라고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987. Towels.**

- (a) 타월, 시트, 로브, 린넨, 또는 작업복은 한 번 사용한 후 뚜껑이 달린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세탁과 위생처리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b) 타월, 시트, 로브, 린넨, 또는 작업복은 일반 상업 세탁 또는세탁이나 행균 과정에서160° F 이상의 물에 이십오(25) 분이상 담가두는 과정이 포함된 비상업적 세탁으로 세척해야 한다. 만약 제조사의 세탁기, 건조기, 세제, 린스 에이드 및 다른 첨가제 지침에 따라 상업적 세탁에서 찬물에서도 미생물을 줄여주는 화학약품을 사용한다면 이것 또한 가능하다. 세탁 세제가 반드시 항균세제일 필요는 없다.
- (c) 모든 깨끗한 타월, 시트, 로브, 린넨, 또는 작업복은 깨끗하고 노출되지않는 캐비닛이나 용기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988. 액체 용품, 크림, 파우더, 화장품.**

- (a) 모든 액체 용품, 크림, 왁스, 샴푸, 젤, 및 기타 화장 조제품은 깨끗하고 뚜껑이 달린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파우더는 깨끗한 셰이커에 보관할 수 있다.
- (b) 모든 병과 용기에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잘 알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유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모든 병과 용기에는 추가로 명확하게 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c) 화장 조제품의 일부를 고객에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나머지가 오염되지 않는 방식으로 용기에 덜어내야 한다.
  - (1) 이 조항은 병원균을 전파하지 않는다고 입증된 화장조제품 (메니큐어 제품, 인조 모노머액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d) 펜슬 화장품은 사용전에 깎아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989. 금지된 유해 물질/제품의 사용.**

시설 또는 학교에서는:

- (a) 미국 식품의약안전국에서 화장품으로 사용을 금지한 유해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구내에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 (b) 메타크리산메탈액 및/또는염화메틸렌을 구내에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 (c) 미국 식품의약안전국(FDA) 또는 미국 직업안전보건국(EPA)에서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990. 머리받이, 샴푸트레이, 볼, 트리트먼트 테이블.**

- (a) 의자의 머리받이는 고객이 바뀔 때마다 깨끗한 타월이나 종이로 덮어야 한다.
- (b) 샴푸트레이와 대야는 샴푸가 끝난 후 비누와 물로 깨끗이 세척해야 하며, 관리를 잘해서 항상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c) 트리트먼트 테이블에는 사용 후에 반드시 깨끗한 전용 트리트먼트 테이블 종이, 깨끗한 수건, 또는 깨끗한 시트를 깔아야 한다. 수건이나 시트는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즉시 트리트먼트 테이블에서 제거해서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용기에 넣고, 세탁과 위생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전용 트리트먼트 테이블 종이는 한 번 사용 후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 § 991. 침습적 시술.

(a) 면허 소지자와 학생은 고객의 표피 이상의 피부를 제거, 파괴, 절개, 또는 피어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 기기, 기계, 또는 그 외 다른 기술, 또는 이상의 것들의 조합을 사용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행위는 침습적 시술로 간주될 것이다.

(b) 침습적 시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1) 근육을 눈에 띄게 수축시키는 전기의 시술.
- (2) 구입하려면 의료면허가 필요한 국부 로션, 크림, 세럼 또는 이 외 다른 물질의 사용.
- (3) 전기분해 요법 바늘/와이어 필라멘트를 제외한 금속 바늘을 피부에 삽입하는 행위
- (4) 표피 아래 층의 피부를 긁어내거나 벗겨내는 행위.
- (5) 면도날이 끝에 달린 도구나 비슷한 도구를 사용해서 피부를 제거하는 행위.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7316 항, 7320 항, 7320.1 항.

### § 992. 피부 각질제거.

(a) 미용 목적으로 오직 표피라고 불리는 피부의 가장 바깥쪽 세포층만을 어떠한 방법 또는 수단을 이용해서든 제거할 수 있다.

(b) 표피 외에 피부의 살아있는 세포층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박피 기술은 금지되어있다.

(c) 피부 각질제거 용도로는 의료 목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닌 일반의약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d)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모든 각질제거 제품은 반드시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7316 항, 및 7320 항.

### § 993. 금지된 기구.

(a) 시설이나 학교는 굳은 살을 제거할 용도로 또는 기타 유사한 시술을 위해 예리한 칼날이 끝에 달린 기구를 구내에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b) 시설이나 학교는 기미제거와 기타 유사한 시술을 위해 바늘과 유사한 도구를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7320 항, and 7320.1 항.

### § 994. 청결 및 유지보수.

(a) 시설이나 학교는 바닥, 벽, 목조부, 천장, 가구, 비품, 설비를 청결하고 관리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b) 시설이나 학교는 쓰레기, 잘라낸 머리카락 더미 또는 폐기물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